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(안) 심사 보고서

2000. 9. 6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8. 2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0. 8. 28.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00. 9. 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 귀 식 산업위생과장)

가. 폐지이유

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
우리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
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로 통합
운영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
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농지법(2000.1.28 법률제6241호) 제46조제3항 및 농지법시행령
(2000.3.24 대통령령제16757호) 제62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정

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은평구 농지관리위원회에 은평구·종로구 및 마포구가 관할구역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조례 제정은 언제?
-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우리구 조례는 당초 '91.3.15일 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는 '99.7.31일 제정되었음.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관내에 농지가 있는지?
-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관내 농지는 11만평정도 있고 농가는 48세대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인자 : 200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 이유

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우리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근거

- (1) 농지법(2000. 1. 28 법률 제6241호) 제46조
- (2) 농지법시행령(2000. 3. 24 대통령령 제16757호) 제62조
- (3)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(1999. 7. 31 조례 제3651호)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6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.시
시행으로 우리구가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포
합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『시.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
규칙은 시.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』의
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 수렴
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